

# 곤자가 국제학사 규정

제정 2008.09.22.

개정 2008.11.13.

개정 2015.10.29.

개정 2019.01.09.

개정 2019.12.27.

개정 2024.05.22.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곤자가 국제학사(이하 “국제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09.>

제2조 (건물의 명칭) 국제학사 건물의 명칭은 곤자가 국제학사(Gonzaga Hall)로 한다. <개정 2019.01.09.>

제3조 (소유와 운영) 국제학사의 소유권은 서강대학교(이하 “대학”)에 있고, 국제학사의 시설 및 행정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대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강국제학사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에 있다. 유한회사는 국제학사를 관리운영하는 독립법인으로서 국제학사의 건물관리를 용역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4조 (운영원칙) ① 국제학사는 대학의 교육이념인 전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목적인 참된 세계인의 양성을 지향하며, 교훈인 ‘진리에 순종하라(Obedire Veritati)’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19.12.27.>

② 국제학사는 관리행정의 공정함과 투명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전체 공동체의 입사와 퇴사, 안전과 보건위생의 보호관리, 학사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한 학사생활의 편의 제공을 지향한다. <개정 2019.12.27.>

③ 국제학사의 생활지도는 다양한 문화, 언어, 가치관을 지닌 서강대학교의 학생들, 외국대학교의 교환학생들, 서강대학교 이외의 단체에 속한 단기거주자들과 게스트룸 거주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국제공동체 조성과 공동선을 위한 봉사의 삶을 지향하며,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지양한다. <신설 2019.01.09.>

## 제 2 장 조 직

제5조 (대표이사) <삭제 2015.10.29.>

제6조 (학사장) ① 국제학사의 학사장(이하 “학사장”)은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01.09.>

② 학사장은 학사행정 및 학사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27.>

③ 삭제<2019.12.27.>

제7조 (행정실) ① 국제학사는 학사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학사 내에 둘 수 있다. <신설 2019.12.27.>

② 행정직원은 학사행정과 관련된 업무내용을 학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사규정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8조 (사감) ① 국제학사는 남녀 사감 각 1명을 둘 수 있고, 학사장은 사감 중 한 명을 부학사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1.09.>

② 사감은 대학의 교육이념과 국제학사의 운영원칙에 따라 학사장의 학사운영을 보좌한다. <개정 2019.01.09.>

③ 사감은 학사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 (곤자가 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국제학사는 학사운영과 관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곤자가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01.09.>

② (상벌위원회) 국제학사는 사생들의 상벌점 부여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곤자가 상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01.09.>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2019.01.09.>

제11조 (기숙사 운영) 삭제<2015.10.29.>

## 제3장 회계 및 예산결산

제12조 (회계) 국제학사의 회계는 유한회사의 별도회계로 처리하며,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

월말까지로 한다. <신설 2019.01.09.>

- 제13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유한회사는 학사장과 곤자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9.01.09.>
- ② 학사장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숙사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1.09.>

- 제14조 (결산) ① 유한회사는 외부 독립감사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01.09.>
- ② 학사장은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총장에게 전년도 회계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9.01.09.>

## 제4장 입사와 퇴사

- 제15조 (입사조건) ① 서강대학교의 학부생, 대학원생, 교환학생, 한국어교육원 소속의 외국인 학생은 곤자가의 일반사실에 입사할 수 있고, 학사장의 판단에 따라 학사 일정에 지정이 없는 때에는 서강대학교와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자나 관계자 등을 국제학사 일반사실에 단기거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01.09.><개정 2024.05.22.>
- ② 학사장은 대학의 교육목적에 따라 대학의 교원, 직원, 초빙·교환·방문교수, 연구원(방문연구원), 기타 학사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의 게스트룸 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01.09.>
- ③ 학사장은 학사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사실 및 게스트룸 거주 희망자의 입사선발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하고, 입사선발 과정에서 우선선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9.01.09.>
- ④ 학사장은 학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입사금지, 입사제한, 입사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신설 2019.01.09.>

- 제16조 (입퇴사) ① 입사허가를 받은 이는 정해진 기간에 입사해야 한다. <신설 2019.01.09.>
- ② 학사 내 거주자는 거주계약 만료시점까지 퇴사해야 한다. <신설 2019.01.09.>

- 제17조 (비용납부) 입사허가를 받은 이는 정해진 기간 이내에 기숙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9.01.09.>

## 제5장 세 칙

- 제18조 (세칙구성) ① 국제학사 규정에 근거한 학사운영의 구체적인 원칙과 내용은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19.01.09.>
- ② 국제학사 규정과 시행세칙에 근거한 학사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생활수칙을 따른다. <신설 2019.01.09.>

## 제6장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제19조 (제정 및 개정) ① 국제학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기숙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으로 제정되고 개정된다. <신설 2019.01.09.>
- ② 생활수칙은 곤자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되고 개정된다. <신설 2019.01.09.>

### 부 칙 (2008.9.22.)

이 규정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11.13.)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10.29.)

이 규정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01.09.)

이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12.2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05.22.)

이 규정은 2024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한다.